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외국인고용법령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

1. '18.12.27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('19.7.16 시행)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그 간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과 고시*를 개정하여 7.16부터 시행됩니다.

* (신설)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, (개정)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

2. 이에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지방관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민원 안내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,
 -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산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아울러,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는 동 제도가 현장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「외국인 기숙사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」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지방관서(지역협력부서), 고객상담센터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일자리과장),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, 한국고용정보원장, 중소기업중앙회장, 대한건설협회장, 농협중앙회장, 수협중앙회장, 외국인력상담센터장,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

주무관 김정훈 행정사무관 황정호 외국인력담당관 전결 2019. 7. 16.
관 엄대섭

협조자

시행 외국인력담당관-2081 (2019. 7. 16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153 팩스번호 044-202-8027 / kjhun7210@moel.go.kr / 비공개(5)